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선거운동기구 및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기준 변경〉

■ 신정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643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신정훈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1. 27.
3. 회 부 일 : 2025. 11.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운동 및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구·시·군을 현행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와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안산시의 경우 3개의 국회의원지역구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의 구(상록구, 단원구)에만 각각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치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

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선거연락소 등 설치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제1호·제6호 및 제61조의2제1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단위 중 현행 “구·시·군”을 “자치구·시·군”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第61條(選舉運動機構의 設置) ① 선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다음各號에 따라 選舉事務所와 선거연락소를,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정당은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 각 1개씩을 설치할 수 있다. 1. 大統領選舉 <u>정당 또는 후보자가 설치하되, 선거사무소 1개소와 시·도 및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u> 2. ~ 5. (생략) 6.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u>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자치구·시·군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 다만,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선거사무소를</u>	第61條(選舉運動機構의 設置) ① --- ----- ----- ----- ----- ----- -----. 1. 대통령선거 <u>정당 또는 후보자가 설치하되, 선거사무소 1개소와 시·도 및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u> 2. ~ 5. (현행과 같음) 6.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u>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자치구·시·군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 다만,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선거사무소를</u>

<u>두지 아니하는 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둘 수 있으며, 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둘 수 있다.</u> ② ~ ⑦ (생략)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① 정당은 선거에 있어서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선거구안에 있는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의 정당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 ⑦ (생략)	<u>두지 아니하는 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의 수가 국회의원지역구의 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를 1개소를 둘 수 있다.</u>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① ----- ----- ----- ----- ----- ----- 자치구·시·군-----자치구·시·군-----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은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시·도 및 구·시·군 등에 일정기간¹⁾ 선거운동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등)와 정당선거사무

1) 선거운동기구는 후보자가 후보자신분 취득한 때부터 선거운동 기간동안, 정당선거사무소는 법에서 정한 날(법 제61조의2제1항 각호)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하나의 구·시·군이 둘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이하 “지역구”라 함)로 된 경우에는 지역구마다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법 제61조 및 제61조의2).

선거운동기구 및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단위 원칙을 행정구역(시·도 및 구·시·군 등)으로 하면서도 하나의 구·시·군이 둘 이상의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역구마다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선거운동에 있어 지역구가 가지는 역할이 크기 때문임.²⁾

한편, 현행법에 따라 선거운동기구 등의 설치단위로 규정된 행정구역인 ‘구·시·군’ 중 ‘구’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하고, ‘시’는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의미하는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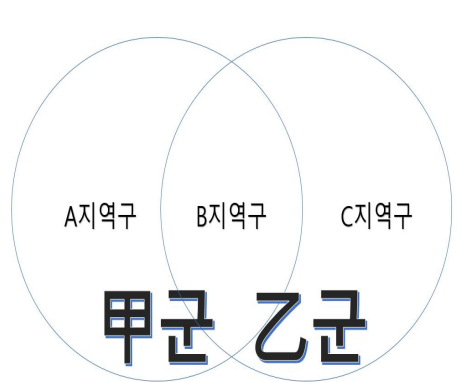
경기도 안산시와 같이 상록구와 단원구의 두 개의 자치구가 아닌 구로 구성된 경우에는 현행법상 대통령선거 등에서 각 구를 기준으로 선거운동기구 등을 설치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2개의 선거운동기구 설치가 가능함.

그러나 실제 지역구는 상록구 일부를 관할하는 ‘갑 선거구’, 단원구 일부를 관할하는 ‘병 선거구’와 함께 양 구를 혼합하여 구성된 ‘을 선거구’까지 총 3개가 설치되어 있어, 선거운동기구 등도 각 지역구별로 1개소씩 총 3개의 설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준에 따라 2개만 설치되는 구조가 되는데,

2) 매일경제(2024.1.29.), “선거구 교통정리 하세월...OOO, OOO도 사무소 옮길판”
디트NEWS24(2020.1.21.), “OOO vs OO당, 지역사무소 설치 설전”

이는 현행법과 같이 하나의 구가 2개 이상의 지역구를 보유하는 구조가 아닌 각 구가 1개의 지역구를 포함하면서, 두 구를 결합하여 추가로 1개의 지역구가 구성되는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현행법상 미비점 예시]

구분	내 용	
가상 사례	하나의 구사군이 둘 이상의 지역구로 된 경우	하나의 구사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사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지역구가 된 경우
		
	甲군에서 A지역구와 B지역구 모두 사무소 설치 가능	甲군과 乙군은 각각 해당 군에 하나의 사무소만 설치 가능
실제 사례	경기도 안산시 사례 : 하나의 구사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사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지역구가 된 경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안산시 선거구 현황 출처: 안산타임스(2024.3.12.)	안산시 행정구역 (행정동 위치도) 출처: 안산시청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선거등에서 선거운동기구 등의 설치단위 기준 중 행정구역인 ‘구’를 ‘자치구’로 변경함으로써, 자치구가 아닌 구로 구성된 시의 경우에는 구가 아닌 시를 기준으로 선거운동기구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지역구를 보다 넓은 범위에서 하나의 단위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 제61조제1항제1호에서는 설치단위를 현행 ‘구·시·군’에서 ‘자치구·시·군’으로 변경하면서, 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지역구로 구성된 경우에는 지역구를 설치단위로 하는 예외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예외규정은 “자치구·시·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구·시·군”을 인용하고 있는 제61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적용되지 않게 되는데,³⁾

3) 「공직선거법」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①선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정당은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 각 1개씩을 설치할 수 있다.

1. 대통령선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설치하되, 선거사무소 1개소와 시·도 및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 다만,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 이상의 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
3.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정당이 설치하되, 선거사무소 1개소(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경우에는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시·도마다,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경우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자치구·시·군마다 선거사무소 1개소)
4.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선거구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
5. 시·도지사선거 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시·도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와 당해 시·도안의 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
6.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자치구·시·군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 다만,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둘 수 있으며, 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둘 수 있다.

시·도지사선거의 경우 현행법상 해당 시·도 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와 시·도 내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를 1개소씩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정안에 따를 때 시·도지사선거에서는 구·시·군 단위로만 선거운동기구 등이 설치될 수 있으므로, 전체 선거연락소의 수는 지역구에도 설치가 되었던 종전에 비해 구·시·군에만 설치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선거연락소의 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⁴⁾

또한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와 관련하여, 현행 규정은 “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지역구로 구성된 경우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지역구는 해당 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자치구가 아닌 구의 수가 국회의원지역구의 수보다 적은 경우만을 상정하여, 현행 규정의 적용을 받는 지역은 선거연락소 수가 오히려 줄어들게 됨.⁵⁾

그러나, 현행법 규정과 같이, 대통령선거 등에서 2개의 (행정)구가 합쳐져 하나의 지역구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구를 기준으로

4)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장 선거에서 현행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역구 기준 48곳에 선거연락소 설치가 가능하지만, 개정안에 따를 경우, 자치구를 기준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 25곳에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 322개소의 선거연락소 중 69개소가 감소하여 총 253개소의 선거연락소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됨.

5) 예를 들면, 전남 여수시의 경우 지역구 甲 선거구 및 乙 선거구로 구성되어 있어, 후보자는 여수시장 선거에 있어 현행법에 따를 경우 선거사무소 한 곳(여수시 기준) 및 선거연락소 한 곳(여수시 甲·乙 선거구 중 선거사무소가 설치된 곳 제외)을 설치할 수 있으나, 개정안에 따를 경우 선거사무소 한 곳(여수시 기준)만 설치가 가능함.

선거연락소·정당사무소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입법적
미비로 보이는바,

이에 개정안의 자구를 정비하여, 대통령선거 등의 공직선거에서
현행과 같이 선거연락소·정당사무소 설치단위를 구·시·군을 기본
단위로 하되, 구·시·군이 “2개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구성”되거나
“하나의 구·시·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시·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
의원지역구가 된 경우” 모두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선거연락
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하는 방
향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한 수정의견]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第61條(選舉運動機構의 設置) ① 선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 여 정당 또는 후보자 는 다음各號에 따라 選舉事務所와 선거연 락소를,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정당은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 구 각 1개씩을 설치할	第61條(選舉運動機構의 設置) ① ----- ----- ----- ----- ----- ----- ----- ----- ----- -----	第61條(選舉運動機構의 設 置) ①----- ----- ----- ----- ----- ----- ----- ----- ----- -----

6.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자치구·시·
군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 다만, 자치구
가 아닌 구가 설치
된 시에 있어서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마다 선
거연락소 1개소를
둘 수 있으며, 하나

6.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자치구·시·
군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 다만, 자치구
가 아닌 구가 설치
된 시에 있어서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마다 선
거연락소 1개소를
두되, 자치구가 아

6. 자치구 · 시 · 군의
장 선거

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
역구로 된 경우에
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국
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
를 둘 수 있다.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① 정당은 선거에 있어서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 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거구안에 있는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

닌 구의 수가 국회
 의원지역구의 수보
 다 적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
 다 선거연락소를 1
 개소를 둘 수 있
 다.

[illegible]

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
역구로 되거나 하
나의 구·시·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
시·군의 일부와 결
합하여 국회의원지
역구로 된 경우에
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국
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
를 둘 수 있다

[illegible]

에는 국회의원지역 구)마다 1개소의 정당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 ----- ----- -----.	하나의 구·시·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 시·군의 일부와 결 합하여 국회의원지역 구로 된 경우에는 국 회의원지역구를 말한 다) -----.
1. ~ 3. (생략) ② ~ ⑦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와 정당
활동의 자유를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2